

## 202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2차 공모

(재)전라남도문화재단에서는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 여건 조성 및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**2024년도 전남 공연장상주 단체육성지원사업 2차 공모**를 시행하오니, 지역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### [ 필독 : 부정청탁금지에 관한 안내 ]

저희 재단에서는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**2차 공모와 관련된 부정청탁이 적발될 경우**, 같은 법률 제7조(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)에 의하여 **청탁인과 해당 지원단체 및 개인에게 과태료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, 지원금 전액 반납**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부정청탁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4월 11일

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

# I 공모 개요

## 1 대상사업

사업명	유형	사업내용	지원대상	지원한도
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	육성	◆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생 협력을 통한 공연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공연장 활성화 도모, 지역주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- (육성) 창작(1), 퍼블릭(1) - (집중) 창작(1), 레퍼토리(1), 퍼블릭(1)	도내 공연예술단체 (2년 이상)	40백만 원
	집중		도내 공연예술단체 (3년 이상)	80백만 원

## 2 공모 일정

구분	일정
공고기간	2024. 4. 11.(목) ~ 26.(금) / 16일간
접수기간	2024. 4. 22.(월) ~ 26.(금) / 5일간
사업설명회	2024. 4. 18.(목) 15:00 ~ 17:00 ※ 필수 참석
심의기간	(행정) 2024. 4. 29.(월) ~ 30.(화) / (서류·인터뷰) 5. 2.(목)
결과발표	2024. 5. 3.(금) ※ 전남문화재단 누리집(www.jncf.or.kr)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 공지

## 3 신청 방법

○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

[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방법]

- ① 시스템 접속    ② 회원가입(단체, 개인 구분 필수)    ③ 지원신청 사업 선택  
 ④ 지원신청서 작성    ⑤ 최종제출하기 클릭    ⑥ 지원신청내역 확인

※ 자세한 내용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고

※ 지원신청서 작성 전,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회원정보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

※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

## II

# 사업내용

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·발표를 촉진시키고,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,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<b>신청대상</b>	◆ 전남소재 공공 공연장과 협약한 공연예술단체 ※ 1개 공연장에 1개 단체만 상주 가능												
<b>지원유형</b>	◆ 사업기간 : '24. 5. ~ 12. ◆ 사업장소 : 전남도 내 일원(공공 공연장) ◆ 지원유형 : 2개 유형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11 1048 1406 1413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육성</th> <th>집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업비</td> <td>40백만 원</td> <td>80백만 원 이내</td> </tr> <tr> <td>지원내용</td> <td>창작 1, 퍼블릭 1</td> <td>창작 1, 레퍼토리 1, 퍼블릭 1</td> </tr> <tr> <td>지원자격</td> <td>도내 공연예술단체로 2년 이상 활동 필수</td> <td>도내 공연예술단체로 3년 이상 활동 필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육성	집중	사업비	40백만 원	80백만 원 이내	지원내용	창작 1, 퍼블릭 1	창작 1, 레퍼토리 1, 퍼블릭 1	지원자격	도내 공연예술단체로 2년 이상 활동 필수	도내 공연예술단체로 3년 이상 활동 필수
구 분	육성	집중											
사업비	40백만 원	80백만 원 이내											
지원내용	창작 1, 퍼블릭 1	창작 1, 레퍼토리 1, 퍼블릭 1											
지원자격	도내 공연예술단체로 2년 이상 활동 필수	도내 공연예술단체로 3년 이상 활동 필수											
<b>사업효과</b>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3 1489 1422 2033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사업효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연예술 단체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▶ 안정적 단체운영 기반 확보                      - 공연, 연습·사무공간 등 물적 기반(H/W) 확보                      - 기획·홍보·마케팅 등 유통 기반(S/W) 활용                      ▶ 우수 작품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공연장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▶ 우수 레퍼토리 확보, 관객개발 증진, 공연장 가동률 제고                      ▶ 예술교육 등 Out-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▶ 공연장 특성화 기반 마련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지역주민</td> <td>▶ 우수 공연, 퍼블릭 프로그램 향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사업효과	공연예술 단체	▶ 안정적 단체운영 기반 확보 - 공연, 연습·사무공간 등 물적 기반(H/W) 확보 - 기획·홍보·마케팅 등 유통 기반(S/W) 활용 ▶ 우수 작품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	공연장	▶ 우수 레퍼토리 확보, 관객개발 증진, 공연장 가동률 제고 ▶ 예술교육 등 Out-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▶ 공연장 특성화 기반 마련	지역주민	▶ 우수 공연, 퍼블릭 프로그램 향유				
구 분	사업효과												
공연예술 단체	▶ 안정적 단체운영 기반 확보 - 공연, 연습·사무공간 등 물적 기반(H/W) 확보 - 기획·홍보·마케팅 등 유통 기반(S/W) 활용 ▶ 우수 작품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												
공연장	▶ 우수 레퍼토리 확보, 관객개발 증진, 공연장 가동률 제고 ▶ 예술교육 등 Out-Reach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▶ 공연장 특성화 기반 마련												
지역주민	▶ 우수 공연, 퍼블릭 프로그램 향유												

**신청자격**

◆ **공연장 상주단체**

- 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

분야	지 원 대 상
연극	연극분야(아동·청소년극, 뮤지컬 포함) 전문극단
무용	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 등 전문 무용단
음악	실내악단, 교향악단, 합창단, 중창단, 오페라단 등 창작 . 연주 전문단체
전통예술	음악, 무용, 연희 등 전통예술창작 . 공연전문단체

◆ **상주단체 - 공연장 간 협약 필수**

-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 상주단체로 매칭하고 협약

대상공연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도내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,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(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, 민간 공연장 배제)</li> <li>▶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를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</li> <li>▶ 상주단체의 공연장 무료 사용(제반 부대비용 포함)을 필수로 함 (상주단체 공연 시 유료 대관이 필요한 공연장 배제)</li> </ul>

- 전남문화재단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업무협약(MOU) 체결을 원칙으로 함
-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

공연장 역할(임무)	상주단체 역할(임무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 공간 무상 제공(제공시설 내역 명기)</li> <li>▶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</li> <li>▶ 협약 공연단체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</li> <li>▶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</li> <li>▶ 협약 공연단체 및 공연 홍보 마케팅</li> <li>▶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사업 시 동일 혜택 부여</li> <li>▶ 보조금 정산(세부내역 정산 협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(작품 기획 및 제작, 홍보 마케팅, 퍼블릭 프로그램 운영, 성과관리 등)</li> <li>▶ 우수작품 창작(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) 개발 노력</li> <li>▶ 퍼블릭 프로그램(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) 실시</li> <li>▶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</li> <li>▶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, 타 공연 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(홍보 마케팅 등)</li> <li>▶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</li> <li>▶ 보조금 정산 총괄</li> </ul>

◆ **상주단체 참여자 간 계약**

- **표준계약서 체결 필수** : 공연단체는 사업에 참여자(피고용인=출연진, 스태프 등)와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※ 문화체육관광부 보급

<b>지원한도</b>	<p>◆ 1개 상주단체 당 최소 4천만 원 ~ 최고 8천만 원 이내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1a2b3c; color: white;"> <th style="width: 2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육성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집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0e6e6;"> <td>사 업 비</td> <td>40백만 원</td> <td>80백만 원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1개 공연장에 1개 단체만 상주 가능</p>		구 분	육성	집중	사 업 비	40백만 원	80백만 원 이내				
	구 분	육성	집중									
사 업 비	40백만 원	80백만 원 이내										
<b>수행 프로그램</b>	<p>◆ 상주 공연장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 <th style="width: 2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80%;">사 업 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">필수 프로그램</td> <td> <b>창작초연 작품 개발 (1작품 이상)</b>            ※ 육성, 집중 공통            [연극·무용] 창작초연(60분 이상) 1편            [음악] 창작초연(극, 음악 등 대작 1편 또는 단편 곡 각 5분 이상(6곡-30분), 공연시간 : 50분 이상            ※ 지역의 인물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초연 창작 작품에 한함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 <b>레퍼토리공연 (1작품 이상)</b>            ※ 집중           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나 공연하였던 우수 작품을 1작품 이상 공연            ※ 1회에 한해 타지역 상주단체를 포함하여 상주단체 간 교류사업 가능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 <b>퍼블릭 프로그램 (1개 이상)</b>            ※ 육성, 집중 공통           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            - 교육 : 지역민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           - 문화나눔 :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           - 기타 :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선택</td> <td> <b>상주단체 간 교류·협력 (1회 이상)</b>            상주단체 합동공연 또는 상주단체 페스티벌(기획사업, 통합 발표회) 참여로 교류·협력 확대 및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 추진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권장 프로그램</td> <td>           조직역량 강화            - 상주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           - 공연장 및 상주단체 관계자 조직운영(기획, 홍보, 마케팅, 회계 등) 역량 강화 프로그램            - 육성-집중 유형 간 매칭을 통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- 동일 공연장 혹은 유사 장르 간 멘토-멘티 프로그램 운영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 분	사 업 내 용	필수 프로그램	<b>창작초연 작품 개발 (1작품 이상)</b> ※ 육성, 집중 공통 [연극·무용] 창작초연(60분 이상) 1편 [음악] 창작초연(극, 음악 등 대작 1편 또는 단편 곡 각 5분 이상(6곡-30분), 공연시간 : 50분 이상 ※ 지역의 인물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초연 창작 작품에 한함	<b>레퍼토리공연 (1작품 이상)</b> ※ 집중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나 공연하였던 우수 작품을 1작품 이상 공연 ※ 1회에 한해 타지역 상주단체를 포함하여 상주단체 간 교류사업 가능	<b>퍼블릭 프로그램 (1개 이상)</b> ※ 육성, 집중 공통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 - 교육 : 지역민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- 문화나눔 :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- 기타 :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	선택	<b>상주단체 간 교류·협력 (1회 이상)</b> 상주단체 합동공연 또는 상주단체 페스티벌(기획사업, 통합 발표회) 참여로 교류·협력 확대 및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 추진	권장 프로그램	조직역량 강화 - 상주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- 공연장 및 상주단체 관계자 조직운영(기획, 홍보, 마케팅, 회계 등) 역량 강화 프로그램 - 육성-집중 유형 간 매칭을 통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- 동일 공연장 혹은 유사 장르 간 멘토-멘티 프로그램 운영
	구 분	사 업 내 용										
	필수 프로그램	<b>창작초연 작품 개발 (1작품 이상)</b> ※ 육성, 집중 공통 [연극·무용] 창작초연(60분 이상) 1편 [음악] 창작초연(극, 음악 등 대작 1편 또는 단편 곡 각 5분 이상(6곡-30분), 공연시간 : 50분 이상 ※ 지역의 인물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초연 창작 작품에 한함										
		<b>레퍼토리공연 (1작품 이상)</b> ※ 집중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나 공연하였던 우수 작품을 1작품 이상 공연 ※ 1회에 한해 타지역 상주단체를 포함하여 상주단체 간 교류사업 가능										
		<b>퍼블릭 프로그램 (1개 이상)</b> ※ 육성, 집중 공통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 - 교육 : 지역민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- 문화나눔 :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- 기타 :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										
	선택	<b>상주단체 간 교류·협력 (1회 이상)</b> 상주단체 합동공연 또는 상주단체 페스티벌(기획사업, 통합 발표회) 참여로 교류·협력 확대 및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 추진										
권장 프로그램	조직역량 강화 - 상주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- 공연장 및 상주단체 관계자 조직운영(기획, 홍보, 마케팅, 회계 등) 역량 강화 프로그램 - 육성-집중 유형 간 매칭을 통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- 동일 공연장 혹은 유사 장르 간 멘토-멘티 프로그램 운영											
<p>◆ 통합성과발표회 참여 예산(3백만 원 이내) 편성</p>												
<p>◆ 창작공연 영상기록 필수(보조금·자부담 편성 가능, 성과물로 제출)</p>												

<p><b>사업추진 절차</b></p>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사업신청</td> <td>&gt;</td> <td>사업심의</td> <td>&gt;</td> <td>선정발표</td> <td>&gt;</td> <td>선정단체 워크숍, 전문가 컨설팅</td> <td>&gt;</td> </tr> <tr> <td>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</td> <td>&gt;</td> <td>전문가 현장평가 /만족도 조사 /영상 기록화</td> <td>&gt;</td> <td>성과공유 및 평가워크숍</td> <td>&gt;</td> <td>정산 및 실적보고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사업신청	>	사업심의	>	선정발표	>	선정단체 워크숍, 전문가 컨설팅	>	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	>	전문가 현장평가 /만족도 조사 /영상 기록화	>	성과공유 및 평가워크숍	>	정산 및 실적보고			
사업신청	>	사업심의	>	선정발표	>	선정단체 워크숍, 전문가 컨설팅	>												
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	>	전문가 현장평가 /만족도 조사 /영상 기록화	>	성과공유 및 평가워크숍	>	정산 및 실적보고													
<p><b>사업 설명회</b></p>	<p>◆ <b>일시/장소 : '24. 4. 18.(목) 15:00 ~ 17:00 / 전남개발공사 대강당</b>      ※ 주소 :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10층</p> <p>◆ <b>참석자 : 사업신청 예정 공연단체(필수), 공연장 관계자(권장)</b>      - 참여여부(참석자 명단) 등 심의자료로 활용 예정</p> <p>◆ <b>주요내용 : 사업 이해도 제고 위한 전문가 강연, 상주단체 육성 사례 공유, 공모접수 및 사업 운영관련 행정 안내</b></p>																		
<p><b>심의운영</b></p>	<p>◆ <b>일시/장소 : '24. 5. 2.(목) 09:00 ~ 18:00 / 전남문화재단 문화마당</b>      ※ 단체별 세부일정은 4. 30.(화) 안내(예정)</p> <p>◆ <b>심의방법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공연단체와 공연장 관계자의 동반 참석</b>을 필수로 하며,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심의진행(공연단체와 공연장의 심사점수 반영비율 60:40)</li> <li>- <b>공연장 예산 매칭의 경우 우대</b> * 매칭비율은 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액을 기준으로 함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27 1211 1426 1361"> <tr> <td><b>*매칭비율 또는 매칭예산액</b></td> <td>10% 이상 또는 1,000만 원 이상</td> <td>20% 이상 또는 2,000만 원 이상</td> </tr> <tr> <td><b>접수반영</b></td> <td>3점</td> <td>5점</td> </tr> </table> <p>※ <b>지자체 및 공연장과의 예산 매칭 협약서 및 공문 첨부 필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 목적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평가</li> <li>- 공연장 상주단체 시설 구비 현황 및 실제 활용 계획, 공연장과 단체 간 협력 활동 계획 등 기본사항 점검</li> <li>-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</li> </ul> <p>◆ <b>심의기준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27 1736 1426 2067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 colspan="3">심의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b>상주단체 (60점)</b></td> <td>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(25)</td> <td>협력의지 및 노력도(15)</td> <td>창작역량 및 조직역량(20점)</td> </tr> <tr> <td><b>공연장 (40점)</b></td> <td>상주단체와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(10)</td> <td>협약단체 지원계획(20)</td> <td>기획 및 홍보 마케팅 역량(10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<b>*매칭비율 또는 매칭예산액</b>	10% 이상 또는 1,000만 원 이상	20% 이상 또는 2,000만 원 이상	<b>접수반영</b>	3점	5점	구 분	심의항목			<b>상주단체 (60점)</b>	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(25)	협력의지 및 노력도(15)	창작역량 및 조직역량(20점)	<b>공연장 (40점)</b>	상주단체와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(10)	협약단체 지원계획(20)	기획 및 홍보 마케팅 역량(10)
<b>*매칭비율 또는 매칭예산액</b>	10% 이상 또는 1,000만 원 이상	20% 이상 또는 2,000만 원 이상																	
<b>접수반영</b>	3점	5점																	
구 분	심의항목																		
<b>상주단체 (60점)</b>	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(25)	협력의지 및 노력도(15)	창작역량 및 조직역량(20점)																
<b>공연장 (40점)</b>	상주단체와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(10)	협약단체 지원계획(20)	기획 및 홍보 마케팅 역량(10)																

## 단체 제출자료

1. 지원신청서 (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)

2. 첨부자료

### 가. 세부 사업계획서

- 별첨 서식(서식 1) 작성 후, 첨부
- (파일명) 2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\_세부 사업 계획서\_단체명

### 나. 활동 및 상주 계획 증빙자료

- 별첨 서식(서식 2) 작성 후, 첨부
- (파일명) 2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모\_제출자료\_단체명

① 고유번호증 / 사업자등록증 / 법인등록증 중 1개

- ② 단체의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 실적자료 5개 이내
- ※ 공연명, 공연일시, 주최주관, 출연자, 공연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함
  - ※ 최근 활동 순으로 5건까지 인정

③ 공연단체-공공 공연장 간 협약서

- ※ 별첨 서식(서식 3)을 참고하여 단체-공연장 상호 협의 내용 작성

④ 공연장 등록증

⑤ 공연장 정보 및 운영현황

⑥ 상주단체 제공 사무실, 연습실 사진

다. 공연장(지자체)과의 예산 매칭 자료(공문 및 확약서) ※ 해당 시

라. 발표 자료(PPT 및 PDF) ※ 발표시간은 10분 내외 예정

- ★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,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★ 필수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- ★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★ '24년도 정산 시 매칭예산에 대한 정산서 제출 필수, 미제출 시 협약 내용 미이행으로 '25년 사업 선정 시 불이익 조치됩니다.

## 필수제출 자료

※ 미제출 시  
불합격 처리

**1. 지원신청 요건**

-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(2023. 4. 11.) 전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연예술 단체 (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단체 소재지 확인 예정)
  - 사업자등록증/법인등록증/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(NCAS)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

**<우대사항>**

**※ 증빙자료 제출 필수**

- 문화예술진흥법(제7조)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
- 재단 문화예술 인력사업 수료자나 2023년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자가 대표자인 단체
- 장애예술인이 대표자인 단체 \* 장애인증 필수 첨부

**2.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**

- **최근 3년('21~'23)**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 되었으나, 사업을 포기 한 경우(3년 지원 불가)
  - ※ 단, 정당한 사유로 재단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와 재단이 정하는 기간 중 사업 포기한 경우는 예외로 함
- **최근 3년('21~'23)** 지원을 받아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차년도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- ※ 단, 정산보고 했으나 재단에서 보완요청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
- **최근 3년('21~'23)** 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, **2024년도** 지원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반납하지 않는 경우
- 보조금 관계 법령 등의 처리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경우
- 국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 기관·단체 및 지자체 출연기관
- 청소년 단체 및 언론사, 언론사 소속의 단체
-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·종교기관·친교단체 등과 이들 기관 소속 또는 운영 단체

**3. 휴식년제 적용대상 단체**

-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4년('20~'23)연속 지원을 받은 단체 : 2024년은 휴식년임

**4.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**

-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안내 및 '0'점 처리
- 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,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

## 5. 다중지원 총량 제한

- 1개 단체에 대해, 2024년 전남문화재단의 모든 지원사업 공모에 최대 2건까지 선정·지원 가능하며, 지원금은 통합하여 80백만 원 이내로 제한함

## 6. 지원자 책임신청제 운영

-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로 '지원자 책임 신청제'를 운영
- 지원자 책임신청제는 지원 신청 시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신청자격과 활동경력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임
- 전남문화재단은 이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할 예정
- 부정확한 정보와 제출 자료 등으로 인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신청 주체인 예술단체에서는 이를 유념하여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 감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람

## 7. 관련법령 및 제도 준수

-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) 제정(2021. 8. 31.)
- 사업 신청 단체는 「예술인 권리보장법」의 준수를 위해 청렴이행서약서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
- 관련 사안이 발생한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
- 예술인 고용보험가입 등 제도 이행 : 지원사업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예술인 및 사업자의 고용보험료 책정과 신고·납부 필수

## 8. 관련 규정, 법률 및 지침 위반 행위자 지원불가

-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
  - \* 단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
- 성희롱·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
-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개인·단체
-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·단체
-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·단체

## IV

## 참고자료

### 1 사업운영 추진 절차

#### ○ 추진절차



#### ○ 주요 추진일정

추진 시기	과정	내용
'24. 4. 11. ~ 26.	사업공모 및 신청 접수	. 사업공모 및 접수(4. 22. ~ 26. / NCAS)
'24. 4. 18.	사업설명회 개최	. 전문가 강연, 사례 공유, 행정 안내 등(필수 참석)
'24. 4. 29. ~ 5. 2.	사업심의	. 행정, 서류·인터뷰 심의 추진
'24. 5. 3.	결과발표	. 누리집,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를 통해 심의 결과 발표(심의위원, 심의평 공개)
'24. 5.	선정단체 워크숍 및 컨설팅	.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및 컨설팅(사업계획 보완 및 방향 제시)
'24. 5. ~ 10.	보조금 교부	. 보조금 교부 (3천만 원 이상 2차 분할 지급)
'24. 5. ~ 12.	전문가 현장평가	. 문화예술 전문가 평가 추진
'24. 5. ~ 12.	사업모니터링	. 사업별 모니터링
'24. 8. ~ 9.	중간 성과공유 워크숍	. 중간성과 공유, 하반기 사업수행 컨설팅 등
'24. 10.	사업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	. 2025년 지원사업 설계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추진
'24. 10.	사업개선을 위한 공청회	. 사업개선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단체·예술인 의견 수렴
'24. 11. ~ 12.	성과공유 워크숍	. 2024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및 평가회
'24. 12.	'25년 지원사업 설계 확정	. 2025년 지원사업 공모(안) 마련 및 공고

※ 사업별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2 유의사항

<p>신청 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개인 및 단체의 자부담 편성 의무 없음 (자율결정)</li> <li>· 지원 사업별 신청자격, 필수 제출서류 등 확인</li> <li>· 지원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</li> <li>·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시, 교부취소 및 보조금 반환 등 행정조치</li> <li>·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<b>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'사업포기 신청서' 제출 필수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1개월 이후에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 포기신청의 경우 다음 해 사업신청이 제한됨</li> </ul> </li> </ul>
<p>지원금 사용 및 예산 편성 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 확정 이후 <b>사업명칭·사업비용·사업내용</b> 변경은 불가하며, 신청서 작성 시 <b>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작성</b></li> <li>· 지원신청 대비 총사업비 변동이 심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</li> <li>· 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나 경상운영비 및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불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사업 내용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</li> </ul> </li> </ul>
<p>사업 수행 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원 확정 시 재단이 추진하는 <b>컨설팅, 평가 및 워크숍, 교육 참석 필수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선정단체 워크숍, 성과공유회(발표회, 평가회) 미참석 시 행정평가 감점</li> </ul> </li> <li>· <b>사업 시작 2개월 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한 교부신청(사업등록) 필수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최종 보조금 교부신청 마감은 10월 31일이며, 그 이후는 사업포기로 간주함</li> </ul> </li> <li>· 사업 선정 후 보조사업 전용 통장 및 보조사업비 카드 개설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선정 후 관련법령 및 규정 위반 확인 시 선정 취소</li> </ul> </li> <li>· 사업 수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 불가</li> <li>· <b>사업 수행 시 각종 홍보물 및 결과물에 후원 사업임을 명시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후원 : 전라남도, (재)전라남도문화재단</li> </ul> </li> <li>·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</li> <li>· 일부 사업은 현장 평가를 진행, 평가 결과는 다음 해 사업지원 신청 시 심의 자료로 활용</li> <li>· 사업 홍보를 위해 재단 담당자의 사업 관련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</li> <li>· <b>최종 사업집행은 사업 회계연도 마감일(2024. 12. 31.)을 반드시 준수</b></li> </ul>
<p>정산 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b>집행정산 및 정산보고서 2025년 1월 말까지 제출</b>,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정산보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, 2025년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</li> <li>※ 정산 증빙자료는 매뉴얼 내용 참고</li> </ul> </li> <li>· 지원 확정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, <b>당초 계획을 재단 승인 없이 변경하여 수행하였을 경우, 지원금 교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</b></li> </ul>

### ③ 보조금 예산 편성 항목

세 목	항 목	용 도	비고
일 반 수용비	사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스텝, 단기스텝, 단기 보조아르바이트, 작업보조자 등</li> <li>· 출연료, 평론, 자문 등</li> <li>· 대표자 사례비 : 사업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편성가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총 사업비의 10% 이내 편성 가능</li> <li>※ 지급 건수 별 활동·작업계획서 증빙 필수</li> </ul> </li> <li>· 전담인력 인건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상주사업 내 역할 및 근무내용 등 명시, 과다편성 지양</li> </ul> </li> </ul>	사업자 등록업체 거래,  개인 간 거래 불가
	발간비	· 도록, 서적 발간	
	홍보 및 마케팅	· 인쇄물, 홍보물, 광고비 등(현수막, 리플릿, 포스터 등)	
	재료비	· 작품 제작에 필요한 (소모성)재료 구입비	
	수선비	· 무대, 세트 의상, 소품 등의 수선비	
	제작비	· 무대, 세트, 전시장 조성 등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제작비(영상, 음악, 무대, 소품, 의상, 액자, 악보 등)	
	수수료	· 회계검증 수수료	
임차료	장소대관 · 시설·장비 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연장, 전시장, 회의장, 부대시설 등 대관료</li> <li>· 의상 및 소품(대소도구, 악기) 대여비 등</li> <li>·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</li> <li>· 출연진 이동 버스, 용달비 등 차량 임차료</li> </ul>	
복 리 후생비	복 리 후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</li> <li>· ‘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했다면 예술인고용보험은 의무 가입해야하므로, 예술인고용보험료 편성 필수</li> <li>· 월평균보수(월평균소득 x 0.75) x 1.6% (0.8%는 사업자부담분으로 별도 편성, 0.8%는 예술인부담분으로 사례비에 포함) 납부</li> <li>·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소요예산 예측 (<a href="http://kawf.kr/aei/emplnsNormalCal.do">http://kawf.kr/aei/emplnsNormalCal.do</a>)</li> <li>· 전담인력 4대 보험료 등</li> </ul>	
기 타 운영비	기 타 운영비	·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비용(운송비 등)	

#### ④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

항 목	용 도
<p><b>개인·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</li> <li>·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 등</li> <li>· 회의비(식비, 다과비), 주류 ※ 사용 시 보조금 환수</li> <li>· 상금, 상금 심사비 등</li> </ul>
<p><b>자산취득비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 종류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) 노트북, 모니터, 프로젝터, 그래픽카드, 음향 장비 등</li> <li>※ 단,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성 물품은 보조금 사용 인정 가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개별 가격 10만 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</li> <li>② 공연·작품·전시에 직접 사용된 물품비</li> </ul> </li> <li>· 해당 물품은 재료비로 간주하며,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</li> <li>정산 시 해당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추가 사진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</li> </ul>
<p><b>행사답사비 등 비용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교통비(항공권 포함), 숙박비, 유류대 등</li> <li>※ 작품 운송과 관련된 운송 비용 인정(거래명세서 필요)</li> </ul>
<p><b>기타사항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개인의 경우 보조금 수령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는 편성 불가</li> <li>· 보조금 수령자(단체대표자)가 거래업체 대표와 동일인일 경우 거래불가</li> <li>·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</li> <li>· 수수료 불가(문자서비스, 공동인증서 발급, 이체 수수료 등)</li> <li>· 세금/교용보험료 납부 시 발생한 가산세, 과태료</li> <li>·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</li> </ul>
<p><b>부가가치세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보조금을 수령 받는 단체가 과세사업자일 경우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</li> <li>※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련 향후 선정된 단체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일 경우, 지원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반납 또는 자체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</li> </ul>